

# 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 예산총액 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총 계 |                | 8,169,814,023 | 245,092,000 |
| 일   | 반 회 계          | 7,289,367,411 | 218,681,000 |
| 특   | 별 회 계          | 880,446,612   | 26,411,000  |
| 기   | 타 특 별 회 계      | 880,446,612   | 26,411,000  |
|     | ·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| 5,174,584     | 155,000     |
|     | ·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 | 6,781,352     | 203,000     |
|     | ·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| 363,030,000   | 10,890,000  |
|     | · 소방특별회계       | 500,460,676   | 15,013,000  |
|     | ·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  | 5,000,000     | 150,000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(명시이월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5,972,852천원으로 하고  
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6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9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 
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기준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난대책 및 복구비

제 9 조 통합재정수지 비율 : -2.14%, 실질채무비율 : 11.25%